익산라파엘센터 임차인모집공고 (공공지원민간임대)

■ 공급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송학동 322-2번지 일원
■ 공급대상 : 59㎡ ~ 85㎡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866세대(60㎡이하~221세대, 60㎡초과~85㎡이하~645세대)
■ 시 행 사 : 라솔산업 주식회사 ■ 시 공 사 : 주식회사 한토건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운영은 사전예약을 통한 방문근린공과 사이버 견본주택 (http://라솔센트럴카운티.com)로 방향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방문은 당사가 정한 시간대별 방문 예약자에 한하여 관람이 가능하며, 익산 라솔 센트럴카운티 홈페이지 (http://www.라솔센트럴카운티.com)에 접수 가 가능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에 내방자들 준수하시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최근 14일 이내 해외입국자
- 견본주택 입장 시 발열 증상이 있는 자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측정 등 예방정책에 불응하는 경우
-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입장 전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기타 진행요원이 안내해 미리 입장 권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및 정부정책에따라 견본주택 관람, 청약 접수, 당첨자 서류접수·제출 및 공공재무제결 일정및 운영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전화 상담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처 청약하기 없도 전달로 인해 청약 관련 적정 접수 및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하시면 청약과 관련된 전화 상담은 청약신청 시 접수대표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입주)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참여하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규칙 적격여부에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주택공급내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주택과 - 3304호 [2022.01.18] 임차인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송학동 322-2번지 일원
■ 공급규모 : 공동주택 지하 2층 ~ 지상 28층 10개동, 총 866세대(특별공급 27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설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관리번호	타입	세대별 주택면적(㎡) 세대별 공급면적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 계	기타공용면적(지하 주차장 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세대 수 특별공급 청	년	신혼부부	일반공급	계	입주예정
2021-850014	59	59.9887	20.6708	80.6595	42.1581	122.8176	35.2925	133	88	-	221		2024년 10월
	84A	84.9629	26.5897	111.5526	59.7092	171.2618	49.9854	-	-	551	551		
	84B	84.9884	26.8641	111.8525	59.7271	171.5796	50.0004	-	-	40	40		
	84C	84.9884	26.8641	111.8525	59.7271	171.5796	50.0004	22	32	-	54		
합 계								155	120	591	866		

※ 실시설계 및 실시 시공 시 전장(가로)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본 주택은 단지명 청약 시, 타입 기준 (84A/84B/84C, 59)으로 구분되어 청약접수가 진행되오나, 청약 신청 시 작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타입 84B형, 84C형은 공급 유형(일반공급/특별공급)을 나누기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 동일한 주택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택타입 59형은 특별공급주택으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청약기준으로 소득기준에 따른 하위100세대와 상위121세대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차등이 있습니다.
- 청약에 적용되는 주택 타입명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표기된 타입 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주거 전용면적+주거 공용면적)에서 주거 전용면적만 표기 하도록 변경 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여 청약 신청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평형 면적(㎡) X 0.3025)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벽체공용,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으로, 상기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 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으로 소수점 네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차임을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동별로,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주주택지(청년) 및 도시형생활주택(청년)은 주거복지법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자 우선 공급 대상 주택이며,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은 주주택지(청년) 및 도시형생활주택(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확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추후 무주택 여부 검증 시 무주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입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필요 시 준공 전 및 입대기간 중에도 입차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특별공급 세대 중 84타입의 청약을 원하시는 세대는 반드시 84C타입으로 청약을 신청하셔야 하오니 청약 전 반드시 타입명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소득 기준 산정

(단위 : 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기준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100%	2,991,631	4,562,535	6,240,520	7,094,205	7,094,205	7,393,647	7,778,023	8,162,399
110% 이하	3,290,794	5,018,789	6,864,572	7,803,626	7,803,626	8,133,012	8,555,826	8,978,639
120% 이하	3,589,957	5,475,042	7,488,624	8,513,046	8,513,046	8,872,376	9,333,628	9,794,879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N→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한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임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및소졸확인하고 소득신정의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근무 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상의 과세 대상 금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상 과세 대상 금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 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 증명서상의 근무 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 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산정합니다.(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 수로 인정)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이 주택의 입대자격기간은 1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입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주택도시기금
- 상기 입대주택은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써 세대당 아래 내용의 주택도시기금이 건설업체에 대출되었습니다.
- 당해 주택은 타입 및 세대별 84A형 : 100,000,000원 / 84B형 : 100,000,000원 / 84C형 : 100,000,000원 / 59형 : 73,500,000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우리은행을 통해 지원되며, 이에 따라 해당 기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권원이 사용승인 전까지 시업부지에 근저당 설정이 되며, 사용승인 이후는 사업부지 및 건물보존등기 후에 우선 설정됩니다.
※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입대차기간 중에는 사업 주체가 납부합니다.

■ 특별공급 임대보증금 및 납부일정

타 입	공급유형	층 구분	공 급 세대수	임대조건(보증금) 임 대 보증금	임대보증금 납부방법 계약금(10%) 계약시	계약일 30일 이후	중도금1회(25%) 2022.11.15	중도금1회(25%) 2023.06.15	잔금(40%) 입주 시
59	특별공급 (신혼부부, 청년)	1~2층	100	136,050,000	10,000,000	3,605,000	34,000,000	34,000,000	54,445,000
		3~4층		141,480,000	10,000,000	4,148,000	35,000,000	35,000,000	57,332,000
		5층 이상		145,580,000	10,000,000	4,558,000	36,000,000	36,000,000	59,022,000
	일반공급	1~2층	121	165,200,000	10,000,000	6,520,000	41,000,000	41,000,000	66,680,000
		3~4층		171,800,000	10,000,000	7,180,000	42,000,000	42,000,000	70,620,000
		5층 이상		176,770,000	10,000,000	7,677,000	44,000,000	44,000,000	71,093,000
84C	특별공급 (신혼부부, 청년)	1~2층	54	230,180,000	10,000,000	13,018,000	57,000,000	57,000,000	93,162,000
		3~4층		238,420,000	10,000,000	13,842,000	59,000,000	59,000,000	96,578,000
		5층 이상		246,020,000	10,000,000	14,602,000	61,000,000	61,000,000	99,418,000

- 주택타입 59형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특별공급 되며, 당첨자 발표 이후에 서류검토 후 사업주체와 익산시청의 최종확인에 따른 정당당첨자의 소득기준 하위순번 100세대(청년 60세대, 신혼부부 40세대)에 대하여 공고한 임대보증금을 계약일전 개별통보하여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주택형 59타입의 121세대는 청년 73세대, 신혼부부 48세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 당첨자발표 이후 소득기준 하위순번 100세대에 해당되나,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차순위 당첨자가 해당 임대보증금로 계약됩니다.

■ 일반공급 임대보증금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타 입	공급유형	층 구분	공 급 세대수	임대조건(보증금) 임 대 보증금	임대보증금 납부방법 계약금(10%) 계약시	계약일 30일 이후	중도금1회(25%) 2022.11.15	중도금1회(25%) 2023.06.15	잔금(40%) 입주 시
84A	일반공급	1~2층	44	255,550,000	10,000,000	15,555,000	63,000,000	63,000,000	103,995,000
		3~4층	48	265,490,000	10,000,000	16,549,000	66,000,000	66,000,000	106,941,000
		5층 이상	459	273,990,000	10,000,000	17,399,000	68,000,000	68,000,000	110,591,000
84B	일반공급	1~2층	40	257,260,000	10,000,000	15,726,000	64,000,000	64,000,000	103,534,000
		3~4층		266,470,000	10,000,000	16,647,000	66,000,000	66,000,000	107,823,000
		5층 이상		274,970,000	10,000,000	17,497,000	68,000,000	68,000,000	111,473,000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마감재로 등 호화시설, 편의시설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1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입대보증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제2항에 따라 1년 단위로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고려하여 조정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명시 됩니다.)
- 상기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1항 1호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의2,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한 금액이므로,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계약시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자모집기준에 입주한 입차인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입주 후 최초 임대차계약으로부터 1년까지(임대차계약 갱신은 1년 단위임) 유효합니다.
- 임대조건은 주택형별 차등이 있으므로 동호별 임대조건은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조건에는 발코니 확장 및 외부사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택형별 전창형 에어컨 3대 및 붙박이장 1개가 제공되며, 제공될 위치는 견본주택 및 사이버모델하우스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입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입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할 때 등에 반환됩니다.
-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위 지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Ⅲ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모집분야		자격요건	선정방법
특별공급	청 년	· 입차인 모집공고일(2022.01.19.(수))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자로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① 성명 : 만 19세 이상인사람인 경우 (만 19세 미만 결혼 및 사망하여 세대 구성한 사람 제외) ② 본인 : 본인 본인 이상 소득 기준 다. 소득 :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주택공급신청일자 공고한 입차인 모집공고일 기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 : 7,094,205원 (2) 주택공급신청일자 공고한 입차인 모집공고일 기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일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 : 8,513,046원	· 특별공급 청약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의 11에 따라 청약자 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방법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입주자 선정
	신혼부부	· 입차인 모집공고일(2022.01.19.(수))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자로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① 성명 : 만 19세 이상인사람인 경우 (만 19세 미만 결혼 및 사망하여 세대 구성한 사람 제외) ② 본인 : 본인 본인 이상 소득 기준 다. 소득 :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주택공급신청일자 공고한 입차인 모집공고일 기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 : 7,094,205원 (2) 주택공급신청일자 공고한 입차인 모집공고일 기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일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 : 8,513,046원	· 특별공급 청약 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의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입차인 모집공고일 현재(2022.01.19.(수)) 익산시 거주자)에게만 공급합니다.(익산시 외 타시·도 거주자는 부적격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청년, 신혼부부) 공정성 공개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부동산원 청약신청 및 전산추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에 따라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예비입차인을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차인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격

구 분	내 용
일반공급	· 입차인모집공고일(2022.01.19.(수))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 본 주택은 세대당 1건에 한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동복신청 불가) ·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청약신청은 가능하나 세대당 2건 또는 1인 2건 이상 중복청약 시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 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주택 계약 시 계약자와 상입주자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 입차인모집공고일은 청약자격(청약신청자의 나이, 국적,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의 판단 기준입니다. · 청약통장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보유여부,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청약 신청 가능 합니다. 단, 계약자는 입차인 모집공고일(2022.01.19.(수))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기존시점부터 입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차인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 미 충족시 입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자격을 취소하거나 입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차인 선정 방법

구 분	내 용
당첨자 선정 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차인 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첨의 방식으로 당첨자 및 동·호수를 선정합니다.
예비 입차인 선정 방법	· 예비당첨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선정할 예정이며 예비입차인 선정은 한국부동산원 입차인 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첨의 방식으로 선정하며 예비순번은 무작위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예비입차인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홈페이지 게시 및 호 공고할 계획이며, 일반공급 당첨자 계약 이후 발생한 잔여 세대는 예비입차인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청약 접수하여 입주자 선정 및 계약 진행 예정입니다. · 예비입차인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차인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공급일정 및 공급방법 등은 추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택형 59타입의 121세대는 청년 73세대, 신혼부부 48세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 당첨자발표 이후 소득기준 하위순번 100세대에 해당되나,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차순위 당첨자가 해당 임대보증금로 계약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9 제4항)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예비신혼부부부는 주택공급 신청자와 그 세대 구성 예정자까지 포함, 청년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 주택의 범위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주소 세대(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 용도가 오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4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허가일
2의2. 분양권 등 : 분양신 계약서 : *분양신 계약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 제4호 다목에해당 :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상속 주택외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 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민법되어 입대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으로서 처분 기준일 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니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으로 된 제외된다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아파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등록 기준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입대차업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고용하는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 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 되어 있으나 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주택이 아니 다른 용도로 사용 되고 있는 경우로서 입대차업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건물 말한다)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건축하기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 하여야 한다.
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 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Ⅳ 공급일정

■ 청약접수일정 및 당첨자 발표

구 분	신청 일자	신청 방법	청약 신청금	당첨자 발표
특별공급	2022.01.24.(월) ~ 2022.01.25.(화) 09:00~17:30	인터넷접수 청약Home (한국부동산원)	10만원	2022. 01. 28. (금)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http://www.applyhome.co.kr)
일반공급				

※ 상기 신청마감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17:30이 경과하면 청약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청약 서비스 안내(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리도모를 위하여 온갖 영업점 방문없이 간편고 편리하게 청약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이용 안내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KB금융인증서)하신 분으로 아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단, 인터넷뱅킹 1일 및 1회 이체한도가 청약금 (10만원)이상이어야 함)
이용 방법	[PC 청약 시] 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 「공공지원민간임대 선택」 → 청약신청하기 ② 청약신청 : 주택선택 → 주택선택 → 유의사항확인 → 공금융형 / 특별공급 선택 → 청약자격확인 → 선정기준 입력/확인 → 인증서 등 입력 → 청약신청완료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공동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스마트폰용 "청약홈" 앱] 스마트폰앱 "청약홈" 검색 접속 → 접속 후는 PC 청약방법 참조

- 청약은 PC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청약홈' 검색을 통해 청약가능하며, 청약 전에 전국 시중 은행(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서 인터넷뱅킹이 개업하고 공동인증서(또는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KB금융인증서)를 사전에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해당 청약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세대당 1건(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만 청약 가능하며,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의 청약 신청 시 청약신청 및 당첨모두를 무효처리합니다.
- 청약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주택공급 신청 규칙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주거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의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입차인 모집공고일 현재(2022.01.19.(수)) 익산시 거주자)에게만 공급합니다.(익산시 외 타시·도 거주자는 부적격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청년, 신혼부부) 공정성 공개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부동산원 청약신청 및 전산추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에 따라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예비입차인을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차인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주택 청약 및 계약 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구비서류 제출	2022. 02. 03.(목) ~ 2022. 02. 08.(화) 10:00~17:30	당사 주택홍보관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69)
당첨자 계약 체결 (특별공급, 일반공급)	2022. 02. 17.(목) ~ 2022. 02. 19.(토) 10:00~17:30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등에 관한 사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9]
- 당첨자 계약체결 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차인에게 우선 공급함.
- 지정계약 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9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명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입증한 부적격자로 판정되지 않아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받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때 입주자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함.
- 부적격 사항 소명 인내 : 관련 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차인 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어,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 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
- 본 주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인한 분양 및 재당첨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 부적격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으나 소명 기간 내 소명이 되지 않을 시 계약체결이 불가함
- 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당첨에 따라 기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으면 본 주택 입주 가능 시점부터 해당 주택의 입주 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주택체결 시 구비서류

구 분	서류유형 필수	추가	해당 서류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일반 / 특별공급)	○		1.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서면 제출서류 계약 시 대체)
	○		2.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주택홍보관에서 계약금(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아파트 임대계약용(본인 발급용)
	○		4.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가능 대리인 신청 불가
	○		5.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6. 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하여 발급
	○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8. 추가 개별통지 서류	· 사업 주체에서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청 년	○		1. 혼인 관계증명서	· 혼인신고일 확인서, "상세"로 발급
	○		2.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
	○		3. 본인 및 세대원 소득 관련 서류	· 본인 소득이 있을 경우
	○		4. 부모의 소득 관련 서류	· 본인 소득이 없을 경우
신혼부부	○		1. 혼인 관계증명서	· 혼인신고일 확인서, "상세"로 발급
	○		2. 소득확인서류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
		○	3. 결혼 확인서류	· 서약서주택홍보관 비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필요
		○	4.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 혼인 예정 배우자 기준 "상세"발급
		○	5. 소득 관련 서류	· 혼인 후 구성될 만 19세 이상 세대 구성원 모두 소득관련서류 발급
공통 (해당자)	○		1. 임신증명서	· 태아가 소득 관련 가구원 수 포함일 경우 발급
	○		2.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
	○		3. 비사업자확인자서	· 주택홍보관 비치
		○	1.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 · 청약자 기준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 사항 (해외자 포함)		○	2. 위임장	· 주택홍보관 비치, 청약자 인감도장 날인
		○	3. 대리인 신분증, 인장	· 재외 동포는 국내 내주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한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서 나 구비서류)는 입차인 모집공고일(2022.01.19.(수))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주택홍보관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한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이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시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민등록번호" 등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택홍보관 방문 시 청약 당첨자 외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소득증빙서